



보건복지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1. 관련 :

- 가.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(보험급여과-2757, '22.5.20.)
- 나.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-요양병원 안내(보험급여과-2933, '22.5.31.)
- 다.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-중증면역저하자 안내(보험급여과-2934, '22.5.31.)
- 라.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안내(보험급여과-2932, '22.5.31.)
- 마.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확대 즉시 적용 요청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9171, '22.7.22.)
- 바.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협조 요청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9192, '22.7.22.)
- 사.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-중증면역저하자,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청구 중지 안내(보험급여과-3745, '22.7.22.)

2. 코로나19 환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도입된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대상기관 :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
* 적용병상 :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
- 적용기간 : 2022.7.22. 진료분 부터 한시적 적용

붙임 : 1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
2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요양병원」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기초의료보장과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강원도지사, 대전광역시장, 충청북도지사, 울산광역시장, 충청남도지사, 경기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

주무관 **조민정** 사회복지사무 대결 2022. 7. 26. 관 **황지민** 보험급여과장 전결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3782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 / <http://www.mohw.go.kr>
급여과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73 / chomjz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